

인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가단2460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

변론 종결 2023. 8. 9.

판결 선고 2023. 9. 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8,022,714원 및 그중 37,662,124원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2022. 8. 23.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1. 11. 1.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3. 접수 제4910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8. 3. 22. C은행 임학동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을, 2019. 3. 7. 중소기업은행 D지점으로부터 22,500,000원을, 2020. 3. 18. C은행 임학동지점으로부터 20,000,000원을, 2021. 3. 24. E은행 계산동지점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21. 12. 8.경 이후 대출원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을 대위하여 2022. 3. 23.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대출금과 지연이자 합계 3,706,476원, 2022. 4. 21. C은행에 대하여 대출금과 지연이자 합계 24,977,395원, 2022. 6. 23. E은행에 대하여 대출금과 지연이자 합계 10,049,863원 등 총 합계 38,733,7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 각 대위변제금 중 합계 1,071,610원은 임의회수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에게 발생한 구상금채무는 2022. 6. 23. 기준 합계 38,022,714원[= 잔여 대위변제금 37,662,124원(= 38,733,734원 - 1,071,610원) + 지연손해금 합계 360,590원]이며,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7%이다.

다.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계약

1) 피고들은 2000. 2. 25.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15. 9. 15. 협의이혼을 하였고, 2015. 12.

14.경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1. 8. 5. 인천가정법원 2021호협4606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2021. 10. 1.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한편, 피고들 사이에 낳은 자식은 없는 상태이다.

2) 이후 피고들은 2021. 11.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91026호)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잔여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38,022,714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37,662,12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2.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8.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의 이혼으로 인한 피고 A의 재산분할 비율은 50% 정도로

추정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설령 부부인 두 사람에게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4,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 사이에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들 사이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B은 피고 A과 협의이혼할 당시 약 20여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2019. 4.경부터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2021. 10. 1.경까지의 금융거래내역만 확인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A에게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반환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0,000,000원 상당을 인수한 점에다가 혼인생활에 있어서 피고 B의 기여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피고 B이 인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고범진

별지